

(재)한국품질재단(이하 ‘품질재단’이라 한다)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(이하 ‘등록조직’이라 한다)은 인증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요령과 같으며 등록 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요령 준수의 책임은 등록조직에 있습니다.

본 ‘인증서 ·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’의 내용은 제도 관련 법률, 국제기준, 인정기관 기준 및 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. 변경된 내용에 따라, 품질재단 발행 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품질재단 Home Page (<http://www.kfq.or.kr>)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1. 등록 조직은 인증서 · 인증마크의 사용, 기타 수단에 의한 사실의 홍보는 인증 받은 해당범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효력이 취소된 경우에는 홍보 및 인증서 ·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해당 스킴에 대하여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,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2. 등록 조직은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 인증서 · 인증마크는 인증된 주장과 연계해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.
4. ISO(국제표준화기구)의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5. ‘ISO 로부터 인증받은’, ‘ISO 가 인증한’, ‘ISO 인증’, ‘ISO 인증서’, ‘ISO 등록’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6. 인증에 대한 홍보 및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제도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 즉, 등록조직에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부분에 한하여만 홍보하고 인정마크 및 제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7.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8. 품질재단 및/또는 인증제도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서 ·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9. KFCC CoC 인증받은 조직의 경우,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산림인증제도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조직은 최신의 ‘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로고 사용표준(KFCC-S-04)’을 준수해야 하며, 이는 <https://kfcc-kofpi.co.kr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“끝”.